

한국원자력학회 추모세션 운영 규정

제정 2026. 03. 06.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원자력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의 별세 시, 그 업적을 기리고 학술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학회 공식 프로그램으로서 ‘추모세션(Memorial Session)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- ① 본 규정은 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학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술 행사에 적용한다.
- ②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추모세션은 학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.

제3조(운영주체)

- ① 추모세션은 원칙적으로 피추모인의 주요 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회(Division)가 주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피추모인의 연구 분야가 복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다.
- ③ 주관 연구회는 기획, 예산 관리, 기록 보존 및 본 규정 준수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.

제4조(추모 대상자의 자격)

- ① 추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1. 별세 당시 또는 생전에 학회 회원이었을 것
 2.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원자력 분야 및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을 것
- ② 대상자 선정 시 학문적 우수성, 산업 및 정책 기여도, 학술 공동체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
- ③ 추모세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별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 및 기한)

- ① 추모세션 신청은 해당 연구회의 책임 하에 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. 개인 회원의 제안은 반드시 연구회의 공식 추천을 거쳐야 한다.

- ② 신청서는 해당 학술대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제출 서류)

추모세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추모 대상자 선정 사유서 및 주요 업적 요약서
2. 세션 구성안 및 발표 예정자 명단
3. 예산 소요 및 재정 조달 계획(필요 시)

제7조(승인 절차 및 심의기준)

- ① 신청안은 해당 연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선정 기준 충족 여부, 학문적 의의, 학문 분야 간 형평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며,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정량적·정성적 기준을 참고한다.
1. 학술적 업적 : 학문적 수월성, 주요 국제 학술상 수상 실적, 대표 논문의 학문적 영향력 등
 2. 사회적 파급효과 : 기술 상용화 실적,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여, 산업계 또는 공공 부문에 대한 영향력, 인재양성 기여 등
 3. 학회 공헌 및 리더십 : 학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, 학술대회 기획·운영 기여, 학회 공동체 발전에 대한 지속적 공헌 등

제8조(운영 원칙)

- ① 추모세션은 원칙적으로 정기 학술대회 기간 중 일반 기술세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.
- ② 별도의 시간 배정 또는 특별세션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동일 인물에 대한 추모세션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. 다만, 학문적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9조(세션 구성 권고)

추모세션은 학술적 가치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한다.

1. 고인의 약력 및 업적 소개
2. 고인의 연구 분야와 연계된 최신 학술 논문 발표
3. 동료 및 후학의 회고 발언
4.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

제10조(윤리 및 저작권 준수)

- ① 고인의 성명, 초상, 저작물, 유작 등을 공식 프로그램, 홍보물 또는 발표 자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가족(또는 소속 기관)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, 그 책임은 주관 연구회에 있다.
- ② 사후 논문 출판 시에는 사망 사실을 각주로 명시하고, 저작권 관련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추모세션은 학문적 기여를 기리는 목적에 충실하여야 하며,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무 및 장기 프로그램)

- ① 추모세션을 1회성 행사로 운영하는 경우, 일반 기술세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만약, 이를 연례 ‘추모 강연(Memorial Lecture)’ 또는 ‘추모상(Award)’ 등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
 - 2. 기금(Endowment) 조성 계획
 - 3. 연간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식
 - 4. 운영 책임 주체

제12조(형평성 및 투명성)

- ① 학회는 학문 분야 간 균형을 고려하여 추모세션을 승인하여야 한다.
- ② 승인된 추모세션의 선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은 기록으로 보존한다.
- ③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논란이나 오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